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745호 2023. 4. 17.(월)

## 차 례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_\_\_\_\_ 1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2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_\_\_\_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_\_\_\_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35호 분묘개장공고(1차)-검단17호근린공원 \_\_\_\_\_ 21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6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4. 1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79-4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4.1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4-1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13-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79-4 (경서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4-3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39번길 4-9 (오류동)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6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나스로194번길 9-13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존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33-1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5번길 8 (원당동)	20200720	바리미로 50미터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31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50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40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54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41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58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42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62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43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66 (원창동)	20090922	옛날 청라도가 파랑으로 불려,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7-1, 228-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15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7, 227-7,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13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9-3, 229-2, 230	인천광역시 서구 반월로 107 (오류동)	20090922	반월이라는 옛 마을이름에서 유래	
13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3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세티푸르지오2단지)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검암역로열파크세티푸르지오2단지 (한들지구 1블럭 1로트)
1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3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세티푸르지오1단지)	20090922	옛 자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검암역로열파크세티푸르지오1단지 (한들지구 2블럭 1로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3-4-17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2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2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121025	"아무지고 탑스립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오류동 1621-6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2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로 46 (오류동)				오류동 1621-1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81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4.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방범수당 삭제에 따라 방범수당 조항 삭제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94,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방법수당 삭제에 따라 방법수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조문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별표 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div style="text-align: right;">등급별</div> <div style="text-align: left;">근무년수별</div>	1 등 급	2 등 급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u>	<u>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u>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u>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제14조에따른 ----- <u>필요한</u> ----- -----</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1. <u>일반직 의사</u> : [별표 1]의 <u>지급구분표</u></p> <p>2. <u>전임전문직의사</u> : [별표 2]의 <u>지급구분표</u></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u>의료법</u>」 제2조제2항의 <u>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일반직 공무원인 의사</u>: <u>별표 1의 지급구분표</u></p> <p>2. <u>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u>: <u>별표 2의 지급구분표</u></p>
<p>제3조(방법수당) ①영 별표 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u>고용직공</u></p>	<p>&lt;삭 제&gt;</p>

무원의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  
-----  
-----  
-----  
----- 별표 4-----.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br>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81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4.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급자에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5배로 개정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94,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 수급자에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5배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u>2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u>2배</u> 상당액으로 한다.</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 <u>5배</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5배</u> -----.</p>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835호

## 분묘개장공고(1차)-검단17호근린공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검단17호근린공원] 편입부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3. 4.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분묘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68-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검단17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은로 61(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8. **공 고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9. **신 고 처**
  - 한국부동산원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백양빌딩 405호(☎ 032-569-7566~8))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4층(☎ 032-560-4802))
10.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사진촬영)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인감증명, 사실확인 서류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후 개장과정에서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분묘의 공고는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